

# 奎章閣小考

—奎章閣志를 중심으로 본 概觀<sup>(1)</sup>—

李 離 和\*

《차 례》

- |                    |               |
|--------------------|---------------|
| 1. 奎章閣의 設置         | 5. 奎章閣志의 내용   |
| 2. 奎章閣의 性格         | 6. 奎章閣의 關係 典籍 |
| 3. 奎章閣志의 成立過程      | 7. 結 論        |
| 4. 初草·再草·完成本の 목차비교 |               |

本稿는 奎章閣의 制度·儀式 또는 組織과 機能 등을 적은 奎章閣志를 중심으로 하여 본 奎章閣 전반에 관한 概觀이다. 따라서 奎章閣志 解題의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 동시에 앞으로 奎章閣에 대한 본격적 연구를 위한 예비적 노트가 된다. 아직 奎章閣에 대한 단편적인 논문들은 있어 왔지만 전반적인 研究가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이런 前提 위에서 本稿는 奎章閣의 설치에서부터 奎章閣志가 성립된 1784년(正祖 8)까지를 중심으로 고찰하려는 것이며, 그후의 발전·변천과정은 別稿에서 다루려고 한다.

## I. 奎章閣의 設置

奎章閣은 朝鮮朝 正祖가 即位한 해인 1776년(英祖 52)에 昌德宮의 北苑에 설치되었다. 이 설치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록들이 있다.

其即昌德之北苑 而營度之…於是經始于丙申三月 至七月 工告完<sup>(2)</sup>

營建都監 以奎章閣 今已畢役啓 營建都監 具允鉦 鄭民始 堂上以下 施賞有差<sup>(3)</sup>

이로 보면 正祖가 즉위한 3월에 建物の 着工을 시작해서 7월에 완료된 것이다. 正祖는 3

\* 奎章閣 圖書 解題委員

(1) 奎章閣에 관한 관계 논문으로는 藤塚 鄰의 「李朝の學人と 乾隆文化」(京城帝國大學法文學會編 「朝鮮支那文化の 研究」), 高橋 亨의 「弘齋王의 文體反正」(靑丘學叢 제 7 호), 李丙燾의 「成研經濟與其學術述略」(稻葉博士 還曆紀念 滿鮮史論叢), 末松 保和의 「奎章閣と 奎章總目」(小田先生頌壽紀念朝鮮論集), 李在郁의 「奎章閣開設의 緣由に就て」(文獻報國所收), 그리고 金龍德의 「奎章閣考」(中央大學校論文集 제 2 집, 1957), 白麟의 「奎章閣藏書에 대한 研究」(연세대 학교도서관, 1962) 등이 있다. 또 學術座談으로 朴秉濠, 宋贊植, 金龍德의 「奎章閣의 史的 意義」(韓國學報 제 11집, 1978)가 있다.

(2) 奎章閣志 建置第一 內閣條.

(3) 日省錄 英祖 52년 7月 25日 己丑條.

月 5日에 英祖가 昇遐하자 그 5日 후인 10日에 即位하였던 것이다. 그 着工한 日字에 대해 서도 日省錄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召見營建都監堂郎于盧次 具允鉉奉御書閣圖形進伏<sup>(4)</sup>

正祖實錄에는 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營建先朝御製奉安閣 以具允鉉鄭一祥 爲營建堂上 兼察修理之任<sup>(5)</sup>

즉 3月 7日에 先朝御製 奉安閣의 營建都監을 임명하고 3月 13日에는 그 圖形을 만들어 착수한 것이 된다. 한편 完工에 대한 다른 기록도 있다.

建奎章閣于昌德宮禁苑之北 置提學直提學直閣待教等官…三月經始 至是告工完 初稱御製閣 後因肅廟御扁 名奎章閣<sup>(6)</sup>

여기에서는 3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9월에 완공된 것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附帶 機構 즉 宙舍樓 奉謨堂를 비롯하여 閣古觀 移安閣 등이 차례로 완성된 것을 말하는 것이요, 또 처음으로 守直 官員을 두어 奎章閣의 사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日省錄에도 이를 뒷받침해주는 기록이 보인다.

列朝御製 尙無奉安之所 故肆建奎章閣於後苑之內 欲爲奉安 既奉御製 則不可無所掌之官 依宋龍圖閣學士等官 欲設置一官<sup>(7)</sup>

그러므로 이때는 典官을 임명한 것이다. 그리하여 同日字로 提學에 黃景淵 李福源, 直提學에 洪國榮 俞彥鎬를 임명하고 계속해서 이들의 問安을 받고 그 節次를 적은 奎章閣節目의 持入을 명하고 있다. 이를 종합할 때 3월에 御書閣을 먼저 착공, 7월에 완성하고 이어 계속해서 여타의 공사를 벌여 9월에 그 大綱을 정하여 始務한 것이다. 그 명칭에 있어서도 일정치 않았다.

予曰 御書閣 何當畢役 民始曰 似當於念間訖役矣<sup>(8)</sup>

分遣承旨景慕宮 奎章閣奉審<sup>(9)</sup>

처음에는 御製閣 御書閣 또는 奎章閣으로 섞어 부르다가 7월에 完工된 후에 奎章閣으로 정하여 불렀음을 알 수 있다. 이런 緣由는 奎章閣의 성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奎章閣이란 명칭은 世祖 때에 비롯한 것이다. 梁誠之는 “御製詩文을 麟趾堂東別室에 奉安하고

(4) 日省錄 英祖 52년 3월 13일條.

(5) 正祖實錄 卷 1, 即位年 3月 壬午條.

(6) 正祖實錄 卷 2, 即位年 9月 癸巳條.

(7) 日省錄 英祖 52年 9月 25日 癸巳條.

(8) 日省錄 英祖 52년 7月 11日 庚辰條.

(9) 上同 7月 7日 丙子條.

이름을 奎章閣이라하며 또 여러 서적을 內閣에 所藏하여 이름을 秘書閣이라 부르며 兼帶하는 大提學 등의 官을 두자”고 건의하였었다. 그러나 실지를 보지 못하였다. 肅宗 때에 列聖의 御製 御書를 宗正寺 안에 小閣을 지어 奉安하고 御書의 「奎章閣」 석자를 써서 걸게 하였으나 規制는 갖추지 않았었다.<sup>(10)</sup>

## II. 奎章閣의 性格

奎章閣의 性格은 곧 奎章閣의 役割 또는 機能을 말하는 것이다. 奎章閣은 애초에 그 명칭이 御製閣 또는 御書閣으로 불리웠던 연유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御製 및 御書의 奉安所였던 것이다. 그러나 처음에는 單純機構를 표방하였으면서도 여러 가지 과정에서 다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앞에서 말한 御製 御書 및 역대 典籍의 奉安所 및 藏書閣으로서의 기능이다.

奎章閣…所以奉當宇 御眞御製御筆寶冊印章…奉謨堂 所以奉 列朝御製御筆御畫顯命遺誥密教 及 璿源世譜寶鑑狀誌也…閣古觀 皆有高 皆所以藏華本圖籍也 移安閣 所以爲御眞御製御筆移奉曝晒之所也 西庫 所以藏東本圖籍也<sup>(11)</sup>

奎章閣內的 기구 또는 건물로서 本閣과 奉謨堂 閣古觀 皆有高 移安閣 西庫 등의 소임을 각기 규정하고 있다. 이런 것은 奎章閣의 초보적 기능이면서 후기에 내려올수록 이 초보적 기능이 계속 또는 강화되었다.

둘째는 學術機關으로서의 기능이다.

今世之人 委靡頹惰 便成俗習 淬勵無望 振作無期 士大夫名節文學 掃地而無餘 予以一分矯救之道 特置內閣 崇獎文華 則要爲他激勵之道也 設置藝貫 則要爲他覺動之資也<sup>(12)</sup>

거저가는 士大夫의 名節과 文學을 振作시키는 한 방법으로서의 建閣의 의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正祖의 뜻은 日得錄의 政事 및 人物條에서도 자주 나타난다. 적어도 正祖의 의도는 단순한 王立 圖書館의 기능과 동시에 학문기구로서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의 두 기록을 토대로 한 종래의 견해로, 藤塚鄰은 「李朝의 學人과 乾隆文化」에서 奎章閣의 설립은 「清朝乾隆帝의 四庫全書 편찬의 大文化事業에 영향되어 學問尊重 文化促進의 목적을 가지고 창설된 것이다」하였고, 高橋亨은 「弘齋王의 文體反正」에서, 奎章閣의 설치는 「閣臣을 精選하여 그들의 文體를 통하여 一代 文章의 모범을 세우며 閣臣을 試官으로 하여 科文의 積習을 개혁하고자 하였다」고 하였다. 또 대체로 李丙燾도 이런 견해를 따

(10) 正祖實錄 卷 11, 5년 2월 丙辰條, 日省錄 正祖 即位年 9월 25일條 및 奎章閣志 建置第一 內閣條 참조.

(11) 奎章閣志 建置第一 內閣條.

(12) 正祖實錄 卷 13, 6년 5월 乙丑條.

르고 있다.<sup>(13)</sup>

셋째는 政治機構로서의 기능이다. 이것은 工曹參判 李澤徵이, 閣臣들이 그 職分을 넘어서 越權을 하고 왕 자신이 그들을 昵待한다는 상소<sup>(14)</sup>에 대한 傳敎에서 나타나고 있다. 李澤徵의 위의 상소가 있자, 時原任大臣들인 領議政 徐命善, 左議政 洪樂善, 右議政 李福源등이 그의 請罪를 들고 나왔다. 그러나 正祖 자신은 이들을 무마하고 다음과 같이 傳敎하였다. 이 傳敎는 正祖가 宮中의 음모속에서 三位에 올라 자신의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던 사정과 이에 대한 한 대응책으로 설립된 奎章閣의 御製閣 또는 藏書閣으로서의 기능은 「外面小節」임을 밝히고 자신의 본뜻은 「別有在焉」이라 먼저 밝힌 다음에,

與在貳極 備經百艱 及至初政 首除威畹之一番濁亂者 必欲使朝著清明 世道底定者 即予之一副苦心也 蓋當日之甘心國家 讎若君父者 威里也 謀危國本 必欲沮戡者 威里也 畢竟天佑吾東 次第夷滅者 亦威里也<sup>(15)</sup>

이것은 正祖가 世孫으로 있을 때부터 온갖 凶計로 世孫을 해치려는 洪麟漢 일당의 꾀해와 발호 및 이들을 제거한 내력을 말하는 것이다. 洪麟漢은 正祖의 어머니인 惠敬宮 洪氏의 叔父였다. 思悼世子가 모함에 몰려 죽게 되자, 그를 옹호한 파가 時派였고 더욱 공격한 파는 僻派였다. 洪麟漢은 僻派에 가담하여 英祖의 신임을 두텁게 받았다. 그리하여 이들 一黨은 正祖가 즉위하면 해를 입을까 위구하여 代理聽政을 막으려 하였고 뜻을 이루지 못하자 謀逆을 꾸미다가 賜死된 것이다.

至於宦侍 則居大內深密之處 通威里幽陰之徑 聲氣相連 首尾互結者 固非一朝一夕之故也 予自幼少時 覩破窩藏 一切裁抑 使不得出氣肆行 以是之故 失意怏怏之輩 積忤寡躬 潛圖寡躬 平日之最新親信者數宦 外內交聯 先後相應 或通挾匕之賊 而暮夜入室 或通占房之謀 而暗地埋凶 嚆矢於範吉 前茅於能賊<sup>(16)</sup>

여부터의 宦侍의 폐해를 깊이 느끼고 그들을 멀리하자, 宦官들이 洪麟漢 일당과 交結하여 正祖 자신을 해치려던 사정을 말하고 있다. 즉 威臣 宦官들을 제거하고 그들이 다시 발붙일 곳이 없게 만들며 따라서 權臣의 발호를 막겠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의 깊은 의도는 時派 僻派 나아가 先王인 英祖가 蕩平策으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前轍을 거울삼아 새로운 政治氣風을 振作시키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士大夫 중심의 새로운 政治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首建內閣 選于廷臣 俾掌其職...凡於經史討論 生民疾苦 治政得失 前代理亂 隨意搜獵 實有鄰哉之意焉 惟予建閣之本意 職由是也<sup>(17)</sup>

(13) 金龍德의 奎章閣考(中央大學校論文集 2집, 1957)참조.

(14) 正祖實錄 卷 13, 6년 5월 壬戌條참조.

(15) 正祖實錄 卷 13, 6년 5월 乙丑條.

(16) 同 上.

(17) 同上, 이상의 내용은 正祖 6년 5월 乙丑條의 日省錄·承政院日記·內閣日曆 등에 모두 기재되어 있다.

여기에서 內閣의 성격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經史의 討論에서부터 生民의 疾苦, 治政의 得失, 前代의 理亂까지 內閣의 소임으로 맡기고 있는 것이다. 정책 결정은 물론 왕 자신이 내리되 단순한 諮問機關이 아닌 建議 그 결정의 영향까지 위임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金龍德은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正祖가 當面한 政治現實은 威里의 用權 黨爭 뿐만아니라 나라를 덮는 百般病弊였다. …이 現實을 革新克服하며 民衆을 拯濟하기 위해서는 國利民福을 念頭에 두지 않고 私利 黨利에 골몰하는 것이 習性이 되어 버린 從來의 政治機構로서는 도저히 革新은 뜻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看破하여 正祖는 英斷的 措置로서 奎章閣을 創設하였던 것이다.<sup>(18)</sup>

이 論及은 앞뒤의 사정과 正祖實錄 등 諸根據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 하겠다. 奎章閣提學을 지낸 金鍾秀도 奎章閣志의 跋文에서 「外假禮貌 內寄腹心」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圖書館(學術)적 기능은 「外假禮貌」에 해당하는 것이요, 참신한 政治의 場으로서의 內閣은 「內寄腹心」에 해당하는 것이라 규정할 수 있다.

### Ⅲ. 奎章閣志의 成立過程

奎章閣志는 奎章閣이 설치된 직후부터 편찬에 착수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방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랜 시일을 두고 여러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다. 奎章閣志는 바로 奎章閣의 設置의 沿革·意義 및 組織·機能·儀式 그리고 閣臣의 地位와 權利 義務를 망라한 내용을 담은 것이어서 신중을 기한 惁으로 보인다. 즉 오늘날의 관념으로 정의하면 奎章閣의 設置法 또는 規程과 같은 것이다. 正祖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予即位之初 建奎章閣 既而命閣臣撰志 迄五六年不成 不惟屬纂之緩 制度儀式 未立故也<sup>(19)</sup>

傳于政院曰 閣志未刊之前 凡事 從追例可也<sup>(20)</sup>

처음에는 制度 儀式 등이 뚜렷하게 정해지지 않았고 일이 있을 때마다 왕의 受教 教旨 또는 前例 등을 통해서 그때 그때 이루어져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리하여 그 규모와 윤곽이 차츰 잡혀 가고 있었다.

我聖上即祚之初 首建奎章閣…久未有緒 越五年辛丑 百度乃貞<sup>(21)</sup>

즉 正祖 5년(1781)에 와서야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이다. 따라서 奎章閣志의 편찬도 制度

(18) 前掲 論文.

(19) 奎章閣志 御製序.

(20) 內閣日曆 正祖 4년 8월 21일조.

(21) 奎章閣志(初草本) 故實 및 奎章閣志(再草本) 事實.

# 奎章閣志 初草

奎章閣志卷一

建置第一

有閣則有志有志則必首建置所以昭  
諷勸述任理正規模而先立一書之宏

綱大目也

內閣

奎章閣在昌德宮禁苑之北乃奉 御製時而  
籍之所也先是 國朝設官悉遵宋制如知文  
館之徵集賢殿藝文館之徵學士院春秋館之  
徵國史院以今稽古如出一轍獨未有 御製

<初草本 原本>

儀式의 제정과 并行된 것이다. 徐命膺 등 奎章閣 提學은 閣志의 편찬에 계속 참여하고 일  
부의 내용을 완성하여 그 較正을 진행시키기도 했다.<sup>(22)</sup> 이리하여 正祖 5년에는 奎章閣志  
草記 및 本閣故事節目 등을 정리하여 批下를 받고, 또 徐浩修가 奎章閣志를 撰成하고 이를  
40권 印行하였다.<sup>(23)</sup>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奎章閣志의 草記였다. 이런 初草와 再草를  
거쳐서 本志가 완성되기는 正祖 8년(1784)이었다. 奎章閣志의 표지에 「甲辰新編」이라 기록  
되어 있다. 이것은 初草 再草와 엄연히 구분되는 것을 뜻하며 初草 再草를 근거로 새로 편  
찬하였음을 말한다. 완성과 동시에 御製序가 이루어졌고 印行을 보게 되었다.

奎章閣志成 親製序文 原任提學李福源李徽之黃景源徐命膺 提學金鍾秀 各製跋文 命外閣刊造<sup>(24)</sup>

(22) 內閣日曆 正祖 3년 11월 21일조 참조.

(23) 內閣日曆 正祖 5년 2월 14일 및 2월 29일, 3월 2일조 참조.

(24) 正祖實錄 8년 6월 甲申조.

완성이 되자 校書館(外閣)에 명하여 壬寅字로 간행, 2권 1책으로 編次하였다. 奎章閣志의 藏書記에 의하면 鼎足山城 太白山城 五臺山城 등의 史庫에 각기 나누어 收藏게 하였다.

다음 편찬에 참여한 인사는 閣臣이었다. 初草·再草本의 序에, 閣臣들이 閣志를 다듬었다고 하였고, 또 再草本의 앞에는 「奉教編閣時原任閣臣」의 題下에 徐命膺, 蔡濟恭, 黃景源, 李福源, 洪國榮, 俞彥鎬, 鄭民始, 李秉模, 鄭志儉, 金憲, 金字鎮, 徐龍輔, 金勉柱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 이로 보아 時原任 閣臣들 모두가 편자로 볼 수 있으며 왕의 끊임없는 校閱을 거치기도 하였다.

#### IV. 初草·再草·完成本の 내용 비교

奎章閣에 소장된 ① 初草 ② 再草 ③ 完成本の 書誌事項은 다음과 같다. (다음 數字의 ①은 初草本, ②는 再草本, ③은 完成本을 표시한 것임. 「No.」 표시는 현 奎章閣 소장 번호임).

##### ① No. 1400

奎章閣(朝鮮) 受命編. [年紀未詳].

1册(95張). 寫(初草). 34.4×21.6. 四周雙邊. 半葉匡郭: 25.5×16.6. 有界. 10行 18字 版心: 上下黑魚尾.

序: 御製.

印: [摛文院, 帝室圖書之章].

##### ② No. 734

奎章閣(朝鮮) 受命編. [年紀未詳].

1册(73張). 寫(再草). 36.4×23.2.

序: 御製. 編閣閣臣[銜名].

印: [帝室圖書之章].

##### ③ No. 82, 1966, 3711, 12152

奎章閣(朝鮮) 受命編. [正祖 8年(1784)].

2卷(1册). 活(壬寅字). 36.5×23.8. 四周單邊. 半葉匡郭: 25×17. 10行 18字. 注雙行, 版心: 上花紋魚尾.

標題紙: 甲辰新編……內閣活字.

序: 踐阼之八年甲辰(1784)……御製.

卷末: 李福源, 李徽之, 黃景源, 徐命膺, 金鍾秀 跋.

藏書記: 82: 鼎足山城. 1966: 太白山城. 3711: 五臺山城.

印: 82·1966·3711: [奎章之寶]. 12152: [奎章之寶, 備邊司].

위에서 본대로 再草·再草本은 寫本이며 모두 刊記 또는 跋이 없다. 세 本 중 初草·再草本의 御製序는 同一한 내용의 것이며 完成本の 御製序는 내용이 다른 것이다. 또 編次와 目錄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附隨소임)

##### ① 初草本 卷之一

建置第一；內閣 屬閣 外閣 直院  
 制度第二；堂宇 門廡 扁額  
 職官第三；提學 直提學 直閣 待教 檢校 雜職(司卷 檢書官 領籤 檢律 閣監) 屬閣  
 奉安第四；謨訓 御眞  
 編次第五；校正 會粹 分類 系年錄 語錄 繕寫 奉藏 刊印 頒賜  
 尊閣第六；藏書 校書 進書 曬書  
 卷之二

事例第七；除拜 班序 出入 豹直 考功 起居 晉接 故事 獻議(博考) 代撰(應製) 進箋 筭疏 草記(啓  
 辭 狀啓 啓目) 下諭(關移) 日曆 殿最 隨駕 雜式  
 培養第八；抄啓 試講 試製 親臨 在外 賞罰  
 文物第九；器用 故實

② 再草本 上篇

建置；稽考 謨訓 經理  
 形勝；象形 局勢 塘沼  
 堂宇；樓閣亭臺 門闕  
 扁額；墨妙 題語 樑文  
 職官；叙職 差除 品秩 例兼 肅拜 出入 頒賜 起居 入直 公會 褒貶 筭疏 啓目 草記 箋文 關移 用牌  
 前導  
 器用；寶章 鑄字 牙牌 通符 附攜文院器用

下篇

書策；藏書 奉書 曬書 編書 寫書 印書 購書 校書 粧書 頒書 考書 進書  
 晉接；宜召 宜醞 宜飯 曲宴 廣載 燕射 幸院 事實

③ 完成本 卷一

建置第一；內閣(附江都外閣) 直院 外閣  
 職官第二；差除 例兼(附考試)  
 奉安第三；奉謨訓 奉御眞  
 編次第四；會粹 繕寫 奉藏 刊印  
 書籍第五；藏書 編書 進書 曬書  
 卷二  
 教習第六；抄啓 講製 親臨 賞罰  
 院規第七；宣教(附肅拜) 班序(附隨駕) 豹直(附守官) 殿最(附考功) 起居(附晉接) 獻議(附博考) 故  
 事 代撰(附應製) 進箋 筭疏 奏啓 諭旨(附公移) 日曆 雜式  
 事實第八；宸藻 紀蹟

이상의 목차를 비교해 볼 때 각기 出入이 많음을 알 수 있다. ③ 完成本에서는 ①②의 내용을 다듬거나 정리하여 添削을 가한 것이다. 그러나 內容文의 件數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많은 制度 儀式을 담고 있다. 한편 建置의 沿革에 관해서는 모두 동일하다. 이 중 閣臣들의 地位 또는 機能 特權에 대해서는 初草 再草보다 더 확실하게 정하고 強化된 것이 특징이다. (다음 내용 해제의 職官·教習·院規항 참조). 이것은 「Ⅱ. 奎章閣의 性格」에서 言及한 政策機構로서의 閣臣構成員에 대한 제도적 공인을 위해서인 것으로 볼 수 있다.



# 奎章閣志 再草

奎章閣志上篇

建置

有閣則有志有志則必以建置爲首者  
所以述稽考昭謨訓記經理而先立一  
書之宏綱大目以爲開卷第一義

稽考

書冊乃天道聖言之所載可敬而不可褻故邃  
古造字以典之爲文象冊在丌上尊閣之則尊  
閣書冊已自邃古之初矣是故成周藏書之所  
曰柱下東觀置史守之西漢藏書之所曰麒麟

〈再草本 原本〉

## V. 奎章閣志의 내용

앞에는 간행년인 正祖 8년에 쓴 御製序가 있다. 여기에는 「志」의 일반적 定義 그리고 閣志의 성립 배경과 그 의의를 말하고 있다.

내용은 앞 목록에서 보이는 대로 2권 8目으로 되어 있다. 目안에는 각기 項이 있으며 그 項에 따라 一目了然하게 그 해당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각 項目別 내용은 대개 다음과 같다.

① 建置第一; 建置의 沿革 그리고 建物과 그 建物의 用途를 밝히고 있다.

7. 內閣; 이것은 本閣과 그 소속을 말한 것이다. 각기의 建物과 그 용도는 다음과 같다.

奎章閣; 當宁(正祖)의 御眞 御製 御筆 寶冊 印章. 그리고 街合樓에 當宁의 御墨.

奉讓堂; 列朝의 御製 御筆 御畫 顯命 遺詔 密教, 그리고 璿源世譜 寶鑑 狀誌.

閣古觀·皆有窩; 중국본의 圖籍을 소장하는 곳.

移安閣; 御眞 御製 御筆 등을 정기로 曝曬하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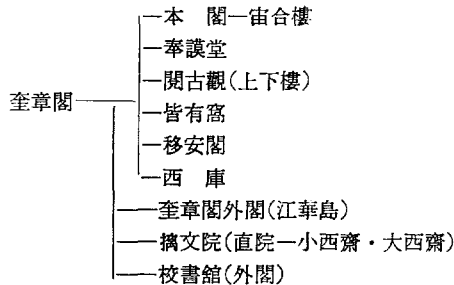
西 庫; 우리 나라의 圖籍을 소장하는 곳.

이상 本閣에 7개의 건물이 있다. 다음에는, 國朝의 設官이 모두 宋나라 制度를 모방했는데 龍圖閣 天章閣과 같은 역할이 없어서 奎章閣을 설치했다는 것, 世祖와 肅宗이 奎章閣의 설치를 시도했다가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 正祖가 종래 宗正寺에 있던 御製 御眞 圖籍 등을 모은 내력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끝에 江都行宮에 奎章外閣을 설치하고 本閣의 것을 나누어 移藏케 하는 규정과 業務를 적어 놓고 있다.

L. 直院; 閣臣들이 豹直(直宿)하는 건물이다. 처음에는 일정한 건물이 없이 永肅門 바깥에 있는 局別將廳의 건물을 썼다가 本閣 提學 俞彥鎬의 건의에 의하여 1781년(正祖 5) 金虎門 안에 있는 舊都總府의 건물을 수리하여 豹直所로 삼았다. 이것이 「摘文之院」이라는 扁額이 걸린 摘文院이다.

㉔. 外閣; 本閣의 屬司인 校書館이다. 一名 芸閣으로 經籍 香祝 印篆의 印刷頒布를 담당한 奎章閣의 부속 기관으로 원래 南部 薰陶坊에 있었으나 1782년(正祖 6) 昌德宮 教化門 바깥으로 옮기고 舊 典校署의 기능을 移管 吸收한 것이다.

이상의 기구와 건물을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 外閣은 들어 있는 셈이나 奎章外閣(江華島)은 書庫로, 校書館는 기능으로 구별된다.

② 職官第二; 奎章閣의 閣臣 이하 雜職의 任免 職位 등을 규정한 것이다.

㉕. 差除; 첫째는 內閣이다. 內閣에는 提學 2(從 1 品에서 從 2 品까지), 直提學 2(從 2 品에서 正 3 品까지), 直閣 1(正 3 品에서 從 6 品까지), 待教1(正 7 品에서 從 9 品까지) 등 6員을 둔다. 이들 6員이 閣臣이며 提學 直提學은 兼職이다. 따라서 지방의 觀察使가 提學 등을 兼任하는 수도 있는데 이것은 지방의 사정을 알기 위해서 때로 필요로 한 탓으로 규정한 것이라 한다.<sup>(25)</sup> 그외에 실무자로 檢校를 두고 있다. 이것은 各曹의 承旨와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雜職으로는 閣監 2(守直者), 司卷 2(傳命 稟啓), 檢書官 4(校書 寫書), 領籤 2

(25) 正祖實錄 6년 5월 壬戌조 참조.

(御製 奉安 등), 檢律(雜職官의 推考 등), 寫字官 8, 書員 10, 監書 6(文書 句檢 등) 등이 다.<sup>(26)</sup> 이 중에서 檢書官과 領籤이 가장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 선발은 「先門地 次才 藝」에 기준을 두고 文筆이 完全한 인사를 閣臣이 試取하여 入啓 受點한다. 이들은 差備官의 역할을 하면서 비록 5품에 해당하나 왕의 특별한 親昵을 받고 있었다.

閣僚輩 視如家人 親如手足 或不無顏情所拘 其有關於刑政者 不暇顧比 而予深恐其或不能一出於天理之公<sup>(27)</sup>

여기에서 말한 閣僚는 閣臣과 檢書官 그리고 領籤까지 포함시키는 것이다. 또 檢書官은 재주있는 庶孽을 通淸키 위해 설치했다고 하나 「先門地」라는 표현대로 名門의 庶孽단을 임명하였었다.

檢書官四員啓下 幼學李德懋 生員柳得恭 幼學朴齊家 幼學徐理修<sup>(28)</sup>

이들이 첫 檢書官이요 가장 명망있던 당대의 文士들로 柳得恭을 제외하고는 모두 庶出이다. 그러나 庶出들도 그 門地를 중시한 탓으로 후기에까지 鄉班 및 寒地의 庶出들은 별반 登用되지 못했다.

다음 吏屬으로는 書吏 10, 書寫吏 2, 兼吏 6, 正書朝報吏 2, 閣童 4, 直 2, 大廳直 2, 使令 15, 引陪 4, 間陪 4, 照羅赤 2, 房直 2, 水工 2, 軍士 7, 丘從 6이다. 이 吏屬들은 閣臣 雜職에 각기 부속되어 있다.

둘째는 外閣(校書館)이다. 外閣에는 提調 2, 副提調 2, 校理 2, 博士 2, 著作 2, 正字 2, 副正字 2 등이다. 그러나 이들은 內閣의 提學 이하 待敎까지 閣臣들이 兼職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職단 있지 人員이 더해진 것은 아니다.

外閣의 雜職으로는 司準 10, 司勸 1과 吏屬으로는 書吏 10, 庫直 2, 使令 7, 軍士 1이 分屬되어 있다. 이들 構成員은 크게는 모두 國王의 지휘 감독하에 있으며 그 數는 總 1백 38명이다.(閣內的 兼職은 제외하고 閣外的 兼職은 포함).

L. 例兼: 提學을 제외한 閣臣들이 知製敎나 春秋館의 兼職을 규정한 것이다. 玉堂의 例에 따라 直提學은 春秋館 修撰官, 直閣 待敎는 編修 記注 記事官을 兼付케 한 것이다. 또 각종 考試에 있어서도 內閣 提學은 兩館大提學이나 提學과 같이 同參게 하였다. 이 例兼은 文任에 있어서도 閣臣의 지위를 藝文館 弘文館과 같이 끌어 올린 것이다.

③ 奉安第三; 列聖의 御製 등을 奉安하는 儀式과 그 日字를 적은 것이다. 첫째 「奉謨訓」에는 奉謨堂에 每年 봄 가을 두차례 왕과 王世子가 展拜할 것과 閣臣은 月 두 차례 奉審할 것을 규정하고 「展拜儀」와 「奉書儀」로 나누어 服式 등 모든 절차를 기술하였다. 둘째 「奉

(26) 팔호안은 담당 직무를 표시한 것이다.

(27) 弘齋全書(藏書閣 간, 1978)중의 日得錄 政事 참조(p. 138).

(28) 內閣日曆 正祖 3년 6월 1일조.

御眞」에는 奉安되어 있는 奎章閣(本閣)에 왕과 왕세자가 매년 봄 가을 奉審할 것과 그 이하의 奉審 절차를 규정하였다. 세부사항은 「御眞標題儀」와 「御眞奉安儀」「御眞移奉儀」「王世子奉審御眞儀」「閣臣奉審御眞儀」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④ 編次第四; 編次の 事實과 儀節을 적은 것이다.

ㄱ. 會粹; 各體를 모으는 것으로 御製의 詩 手書 諭書 封書 論 序引 題跋 記 碑銘 行狀 行錄 祭文 雜著 策問 繪音 傳教 備忘記 批答 判付 經史講義 日省錄 日得錄 및 기타의 文字이다. 이것을 謄寫하여 錄者의 이름을 써서 보관한다. 이 중 日省錄은 正祖에서 처음 시작하여 1910년(隆熙 4)까지 150여년 이어졌다. 왕의 言動을 기록하여 왕 자신이 筆削을 가한 것으로 王朝實錄 承政院日記 備邊司謄錄과 함께 기본 사료가 되고 있다.

ㄴ. 繕寫; 繕寫의 考準 그 奉安本의 數등을 규정한 것이다.

ㄷ. 奉藏; 御製를 摛文院 奎章閣(本閣) 大內에 繕寫後 奉安하는 의식을 적는 것으로 「御製閣本奉安儀」「御製院本奉安儀」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ㄹ. 刊印; 완성된 諸書를 校書館에서 刊印하는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活字나 鑄版의 결정 또는 活字 중에 壬辰字 丁酉字 壬寅字 등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지를 稟旨하여 裁可 받을 것을 기술하고 있다.

⑤ 書籍第五; 서적의 분류와 편찬 및 曝曬 등을 규정한 것이다.

ㄱ. 藏書; 皆有窩와 西庫의 소장 서적을 甲乙丙丁의 4部로 나누고 또 甲部(經)에는 總經類 등 9, 乙部(史)에는 正史類 등 8, 丙部(子)에는 15, 丁部(集)에는 總集類 別集類로 분류했음을 기재하였다. 이것은 宋의 太清樓, 明의 文淵閣의 分類法을 따랐음을 밝히고 있다.

ㄴ. 編書; 編書는 왕의 下命 또는 朝臣의 筮請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 聖旨의 裁可를 규정하고 있다.

ㄷ. 進書; 謨訓 御製를 제외한 御定編撰의 서적 刊印을 進書할 때의 進書의 의식과 절차를 적은 것이다.

ㄹ. 曝書; 소장서적의 曝曬는 매년 1회 端午 후 7월초전 즉 여름철에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⑥ 教習第六; 文臣의 教習 담당의 업무를 규정한 것이다.

ㄱ. 抄啓; 參上 參外의 官員 중에서 37세 이하로 文名이 높은 자를 뽑아 아뢰어 抄啓文臣을 뽑고 이들 抄啓文臣에게는 현직대로 두기도 하고 혹 閑窠로 옮기기도 하여 文風의 振作을 위해 온갖 편의를 제공케 한 것이다.

ㄴ. 講製; 抄啓文臣에 대한 講·製의 規를 閣臣이 마련하여 매달 經史를 강하고 10일마다 程文을 시험케 한 내용을 적은 것이다. 즉 試講의 科目으로는 四書三經 및 史記 程朱 등, 試製의 科目으로는 詩文으로 論策箋啓 등에 時事文과 詩賦箴銘 등 文章文 등이다. 閣臣은 그 시관을 뽑아 入啓하고 摛文院에서 치루게 하였다.

ㄷ. 親臨; 왕이 직접 시행하는 親試 親講의 規式을 적은 것이다. 抄啓文臣에게 매일 親試 親講을 한차례씩 거행토록 하였다. 그 儀式으로는 「親臨試講儀」 「親臨試製儀」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ㄹ. 賞罰; 위의 試講 試製에서 그 성적의 優劣을 짚아서 優者에게는 각기 現任의 경우에 따라 陞品 陞職 및 기타의 賞典을 내리고 劣者에게는 重罰 또는 推考케 하였다.

이상 抄啓文臣에 대한 시험 제도는 文風을 振作시키고 廷臣을 장려키 위한 것으로 科擧 중의 科擧로 最上의 시험이었다. 그리하여 여기에 入參하는 것은 文臣으로서 가장 큰 영광으로 여겼다. 國朝寶鑑에는, “自辛丑以後 凡十選 後之公卿大夫 太半是選中人 而彬彬多文學之士矣”라 하여 그 영향이 컸음을 말하고 있다. 이런 중요한 일을 正祖는 閣臣에게 맡겼던 것이다. 따라서 抄啓文臣에 대한 선발이나 시험은 곧 단순한 文風의 振作이기 보다 派黨을 무너뜨리고 王權의 一元化를 기하기 위한 간접적 역할이 컸던 것이다.

⑦ 院規第七; 奎章閣의 日用 應行을 적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對內的 規로 閣臣 이하 그 構成員만이 習行케 하는 것이다. 그러나 閣僚의 特權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주목된다.

ㄱ. 宣敎; 閣臣 任命에 대한 규정이다. 통상으로 四品官 이상에게 주는 임명장인 敎旨보다 직접 왕이 그 내역을 쓴 敎書로 新拜 閣臣에게 주도록 규정하였다. 또 肅拜에도 통상 品官과는 달리 閣門바깥에서 드리도록 하였다. 이것은 耆社臣의 예에 따른 特權이다.

ㄴ. 班序; 閣臣들의 座次에 있어서는 現任의 大臣 등 職位를 따지지 않고 先生의 順으로 앉게 한 것이다. 閣中의 先後輩 차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또 新拜에는 時任 閣僚들은 모든 屬官까지 참석하여 相見禮를 베풀게 하였다. 讓路에 있어서도 百官의 예에 따라 避馬 歛馬토록 하였다. 隨駕에 있어서도 政院과 같이 陪從케 하였다. 그 의식은 「閣僚相見儀」 「閣僚讓路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ㄷ. 豹直; 閣臣의 直宿을 규정한 것이다. 平常에는 月 直提學 2日, 直閣 待敎 3日, 일이 있을 적에는 直閣 20日, 待敎 30日로 정하였다. 動駕時에는 閣臣의 하나가 守宮케 하고 단일 왕이 宮內를 떠나 經宿할 때에는 檢書官을 시켜 宮內의 일을 보고케 하였다.

ㄹ. 殿最; 매년 6日과 12日에 摛文院에서 內外의 閣屬官과 閣吏들의 근무 성적을 고사케 하였다. 또 提學 이하 매일 6日씩 출근케 하고 봄 여름에는 卯時에 仕進, 午時에 退廳, 가을 겨울에는 辰時에 仕進, 未時에 退廳케 하고<sup>(29)</sup> 閣僚들이 考功啓目を 10日마다 번갈아 修啓케 하였다. 그런데 雜職 이하는 仕進 규정이 없는 것은 매일 매일 출근케 한 것으로 보인다.

ㄱ. 起居; 해마다 正朝 冬至 또는 慶日에 閣外에서 閣臣들에게 問安케 하고 그 晉接을 정한 것이다. 承政院의 예와 같게 하였다.

(29) 이 근무규정은 正祖 5년(1781)의 受敎 懸板으로 현재 奎章閣에 소장되어 있다.

日. 獻議; 왕에게 드리는 獻議와 왕이 下問한 博攷 故事 등에 있어 弘文館 世子侍講院과 같이 드리도록 하였다.

人. 代撰; 왕의 諭書 등을 閣臣들이 代撰케 규정한 것이다. 이 代撰은 종래 承政院의 소임이었으나 正祖 5년부터 內閣에 옮기게 한 것이다.

○. 進箋; 正朝 冬至 및 慶禮時에 그 箋文을 閣臣들에게 바치게 한 것이다. 그 의식은 「閣臣進箋儀」에 기술하였다.

ㄱ. 筭疏; 閣臣들이 疏나 筭을 올릴 때에 弘文館의 예처럼 閣臣들이 직접 올리지 않고 檢書官과 書吏가 承政院에 드리도록 하였다. 이것은 閣臣들이 弘文館의 역할을 담당함과 동시에 檢書官의 기능 신장을 의미하고 있다.

ㄴ. 奏啓; 草記 啓辭 啓目 狀啓 등을 司憲府 司諫院의 예와 같이 드리도록 하였다. 이것은 兩司의 역할을 결합케 한 것이다.

ㄷ. 諭旨; 지방에 사무가 있거나 또는 在外人으로 閣職이 除拜되면 道臣은 그 편의를 제공할 것과 本閣의 公移는 비록 大臣 衙門이라도 監營 등 중간을 거치지 않고 직접 通關케 규정한 것이다.

ㄹ. 日曆; 內閣日曆을 政院日記의 예와 같이 기록케 한 것이다. 閣臣들이 修正하고 檢書官이 編寫케 하였으며 그 내용은 內閣에 대한 모든 사항 뿐만아니라 春秋館의 史官이 쓴 기록까지 주어 그것이 소루하면 담당 閣臣이 潤色케 하여 기록토록 하였다.(그 내용은 다음의 「VI. 奎章閣의 關係 典籍」 참조). 이것은 史官의 역할을 겸한 것으로 春秋館의 職務를 겸임케 한 것이다.

ㅁ. 雜式; 閣臣·閣屬官 등에게 열여덟가지 내외에 관계되는 여러 규정을 정한 것이다. 그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審問 逮捕할 일이 있으면 파면을 왕에게 허가 받은 뒤에 할 것, 둘째 3월 9일 두차례 流霞亭에 出遊하여 賜暇讀書케 할 것, 셋째 奉命의 出使나 受由로 下鄉할 때는 驛馬 등 物品을 지급할 것, 넷째 摛文院의 두개의 印信중에 「奎章閣學士之印」은 提學 直提學이 주관, 「摛文院印」은 直閣 待教가 주관할 것, 다섯째 活字는 壬辰字 丁酉字 壬寅字의 셋으로 內外閣에 分藏할 것, 여섯째 宜召에 쓰는 牙牌, 서적의 命入에 쓰는 牙牌, 서적의 請出에 쓰는 牙牌 등 標信用의 牙牌 셋을 둔 것, 일곱째 測兩器 投壺 버루 玉燈 따위 文房具나 놀이에 쓰는 器物 備置 등이다.

⑧ 事實第八; 奎章閣에 관해 正祖나 諸臣이 지은 글에서 建閣의 緣起와 規例를 정하는데에 관계되는 지난 사실들을 모은 것이다.

ㄱ. 宸藻; 첫째 正祖 即位年에 실시한 增廣文科殿試에서 奎章閣의 本末을 물은 策題를 실고 있다. 이글은 唐宋의 制度, 우리 나라의 故實, 그 의의와 소임 등을 담고 있다.<sup>(30)</sup> 둘째는 正祖 3년에 正祖가 摛文院에 齋宿하면서 珍饌을 내리고 治道 問學하고 난 뒤 물러나와

(30) 이글은 弘齋全書 권 48 「策問」에도 실려 있다.

奎章閣에 대해 지은 七言律詩를 실고 있다. 이때부터 齋宿할 적마다 施賞이 있는 前例가 되었다고 한다.

L. 紀蹟; 첫째 正祖가 正祖 5년에 摛文院에 親幸하여 「史臣錄講義」 3권을 만들어 刊布케 하였는데 그 事由와 함께 徐命膺이 쓴 序文을 실고 있다. 여기에는 閣臣의 重責에 謝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 提學 金鍾秀가 쓴 奎章閣菴題記와 提學 俞彥鎬가 쓴 移院事實記가 있다. 新閣으로 移院할 때의 기록이다. 셋째 提學 徐命膺이 쓴 撰字瑞記가 있다. 여기에는 內閣活字를 만든 전말을 쓴 것으로 世宗때 15만자를 鑄造하고 이때에 다시 平安道按察營에 15만자를 開鑄하여 합 30만자를 보관케 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끝에는 原任奎章閣 提學이요 左議政인 李福源, 原任奎章閣 提學이요 行判中樞府事 李徽之, 原任奎章閣 提學이요 兩館大提學인 黃景源, 原任奎章閣 提學이요 奉朝賀인 徐命膺, 時任奎章閣 提學이요 行吏曹判書인 金鍾秀 등 5편의 跋이 있다. 이들 모두는 閣志의 編者가 되기도 하고 閣의 주요한 일을 담당했던 閣臣이기도 하다.

## VI. 奎章閣의 關係 典籍

이 관계 전적은 奎章閣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를 말한다. 즉 奎章閣의 規例 沿革 事實 藏書目錄 등을 적은 전적이다. 그러므로 奎章閣에 관한 간접적인 자료 즉 예를 들면 일반적인 글을 적은 摛文院廣載帖 本閣上樑文, 奎章閣에서 編書한 御定奎章全韻, 단편적인 사실이 기재된 日得錄 日省錄 등과 같은 성격의 간접적 자료가 되는 전적은 제외된다.

### ① 規例 沿革 史實類

內閣日曆 1,245책. 正祖 3년(1,779)부터 시작하여 高宗 20년(1883)까지 135년간의 奎章閣에 관한 사항을 적은 일기이다. 매 日字 밑에 入直 閣臣을 쓰고 왕의 召對 및 史實을 기록하였다. 이것은 1,245책의 방대한 것으로 日省錄 承政院日記와 같이 주요 史料가 되고 있다.

內閣故事節目 1책. 正祖 5년(1781) 왕의 裁可를 받아 시행한 책으로 奎章閣을 설치하고서 閣臣의 儀節과 禮式 등을 토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분류하여 기록한 節目이다. 이것은 奎章閣志의 母體가 되었다.

內閣恒式 1책. 正祖 5년(1781) 奎章閣의 年中 行事의 恒例를 적은 책이다. 節日 이외의 行幸 등 특별한 날에 奎章閣의 모든 관리 및 役丁들에게 下賜하는 酒肉 藥 柴炭 米 布 등의 수량과 曆書의 頒配定數, 書樓·監書廳·本閣의 用紙 등에 관해 상세히 恒式을 기재하였다. 종래의 「內閣年例頒賜恒式」을 釐正한 것으로 奎章閣志 「雜式」의 세부사항이 되고 있다.

奎章閣取才目錄 1책. 哲宗 8~9년(1857~1858)에 이루어진, 奎章閣의 필사생을 선발할 때 시험보이던 書題 및 書體 목록을 모은 것으로 書體의 각종이 담겨 있다.

**奎章閣日記** 33책. 隆熙 1년(1907)부터 隆熙 4년(1910)까지 奎章閣의 日記이다. 內閣日歷이 중단되고, 이어 隆熙 1년 秘書監이 奎章閣에 이관됨에 따라 종래의 秘書監日記 대신 기록한 것이다. 규장각에 관한 가장 후기의 것이 된다.

② 藏書 分類 目錄類

**圖書集成分編第次目錄** 1책. 閔古觀에 소장된 圖書의 分類 내용을 적은 것이다. 각 函數를 天字文순으로 표시하였고 內容別로 「編」「典」으로 나누었다. 編年은 미상이나 초기의 것으로 보인다.

**奎章總目** 3책. 正祖 5년(1781)에 奎章閣에서 소장한 中國本의 目錄을 적은 것이다. 經史子集으로 분류하고 각책마다 編著者名 著作義例를 附記하고 혹은 序跋을 切取하여 그 概畧을 말하고 혹은 비평의 말을 인용하여 그 편찬의 得失을 밝혔다. 간단한 解題를 겸한 目錄이다.

**內閣訪書錄** 1책. 正祖 5년(1781) 奎章閣 소장 中國本을 經史類와 子集類로 분류하고 그 편저자 및 要點과 書評을 附記하였다. 奎章總目과 비슷하나 書目도 그보다 적고 간략한 것으로 보아 奎章總目보다 앞서 이루어진 듯하다.

**奉謨堂奎安御書總目** 3책. 奉謨堂에 소장한 列朝의 譜牒 誌狀 寶鑑 遺教大寶 御製 御筆 御畫 御押의 總目을 적은 目錄이다. 正祖 때에 이루어졌으나 정확한 연대는 미상이다.

**茲閣冊部錄** 1책. 校書館에 보관된 책의 종류·책수·冊板·板數를 적은 장부이다. 編年 미상이다.

**奎章閣書目** 3책. 奎章閣에 소장된 서적의 總目이다. 奎章總目に 토대를 두어 高宗朝까지 내려 오면서 계속 소장된 것을 補充한 것으로 1책 摛文院, 2책 西庫, 3책 閔古觀으로 나누었다.

**西庫藏書錄** 1책. 西庫 장서의 目錄으로 高宗朝에 이루어졌으며 위 奎章閣書目的 一部分이다.

**摛文院奉安總目** 1책. 摛文院에 奉安된 서적의 目錄. 高宗朝에 이루어졌으며 위 奎章閣書目的 一부분이다.

**江華府外奎章閣奉安冊寶譜略誌狀御製御筆及藏置書籍形止案** 14책. 江華府에 있는 外奎章閣에 御製 등을 奉安秘藏할 때에 그 收藏한 내력과 書名을 적어 보고한 것이다. ① 正祖 6년, ② 正祖 8년, ③ 正祖 8년(1년에 두차례), ④ 正祖 9년, ⑤ 正祖 15년, ⑥ 正祖 15년(1년에 두차례), ⑦ 正祖 19년, ⑧ 純祖 14년, ⑨ 純祖 28년, ⑩ 憲宗 2년, ⑪ 憲宗 5년, ⑫ 哲宗 9년, ⑬ 哲宗 7년, ⑭ 哲宗 8년 奉安分 등이 있다. 그외의 奉安分도 있었겠으나 遺失되어 보관되지 않는 것 같다.

③ 曝書 活字類



**奎章閣曝書目錄** 1책. 隆熙 2년(1908) 奎章閣의 圖籍을 曝曬한 書目과 回數를 적은 목록이다. 앞에는 「索引」에 番號 月日 回數가 적혀 있고 「목록」에는 書目 部帙數 冊數 備考順으로 기재하였다. 奎章閣 圖籍의 曝曬는 매년 한차례 하게 되어 있으나(奎章閣志 書籍第五 曝書항 참조) 그 목록이 전해지는 것이 이것 뿐이다.

**奎章字藪** 1책. 校書館에 있는 活字의 목록으로 緋年 미상이나 大字 105,638字, 小字 44,532字, 合 150,170字로 기재되어 있다. 끝에 監董 李宗寅 등의 명단이 있다.

**芸閣唐字藪(唐鐵字大小)** 1책. 校書館에 수장된 活字의 하나인 唐鐵字 大小의 活字를 7機에 나누어 備置한 것을 기록한 목록. 合 37,186字이며 끝에 守機諸員 李得九 등의 명단이 있다.

**芸閣字藪(衛夫人鐵木大字藪)** 1책. 校書館에 수장된 衛夫人鐵木字를 7機에 나누어 비치한 것을 기록한 목록. 合 136,900字이며 끝에 守機諸員 李得九 등의 명단이 있다.<sup>(31)</sup>

## VII. 結 論

이상에서 奎章閣에 대한 성격 그리고 奎章閣志의 내용 등을 살펴 보았다. 奎章閣이 설치를 본 뒤에 1894년 甲午更張으로 폐지될 때까지 조선조 후기의 文運을 불러 일으킨 중심기관으로 많은 책을 편찬하였으며 文臣의 教習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동시에 많은 經書와 史籍을 인쇄 반포하였다. 그러므로 藏書閣 學問研究機關으로 그 구실을 다하였다. 그리하여 奎章閣의 閣臣 또는 屬僚가 되는 것은 일대 영광으로 子孫 代代의 자랑이었으며 清職의 제일로 쳐왔다.

그들의 職務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弘文館 藝文館 등 兩館, 司諫院 司憲府 등 兩司 그리고 議政府 承政院 春秋館 등의 직무 또는 권한을 포괄한 것이다. 이로 하여 다른 기구의 직무와 권한이 상대적으로 弱化되었다. 이것은 바로 奎章閣이 단순한 文臣의 집합소가 아닌 側近의 정책자문기관 또는 親衛勢力의 結集機構였음을 단적으로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은 無知 放縱의 洪國榮을 閣臣으로 등용하였다가 곧 제거한 사례, 처음에는 奎章閣의 정치 기구로서의 속셈을 말하지 않다가 8년 뒤에 李澤徵의 상소에 의하여 진심을 토로하고 있는 사실에서 엿볼 수 있다. 이때에야 정국의 안정을 기한 후라고 생각되어 진심을 토로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어쨌든 奎章閣의 정치적 성격에 대한 규명과 正祖 이후 奎章閣의 변모과정에 관한 연구가 앞으로 더욱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1) 이상의 관계 전적은 奎章閣圖書韓國本總目錄 참조.